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1. 13 선고 2022가단20000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박재형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훈

변론 종결 2024. 10. 16.

판결 선고 2024. 11. 13.

주 문

1.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2020. 8. 20.자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20. 8. 21. 접수 제689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가. 2020. 11. 23. 체결된 30,000,000원에 대한,
나. 2020. 12. 16. 체결된 120,000,000원에 대한,
다. 2021. 1. 12. 체결된 10,000,000원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146,553,42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146,553,4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 중 원고가 2023. 7. 19. 신청한 감정에 소요된 감정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C의 동생이고, 피고는 C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원고는 C에게 2020. 8. 20. 50,000,000원, 2020. 9. 25.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변제기를 2020. 11. 30.까지로 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C은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C과 피고 사이의 매매예약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C은 2020. 8. 2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20. 8. 21. 접수 제6895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C의 피고에 대한 현금 증여

- 1) C은 2020. 11. 23.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다음날인 2020. 11. 24. 위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이 입금되었다. 이는 C이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2) C은 2020. 12. 16. 120,000,000원을 출금하여 피고가 2020. 11. 23.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용인시 기흥구 E건물 F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는 C이 피고에게 120,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3) C은 2021. 1. 12. 피고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이는 C이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이하 1) 내지 3)항의 현금증여를 통틀어 '이 사건 현금증여'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3, 14, 16, 17,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현금증여 이전에 발생하였고, 비록 이 사건 대여금 중 2020. 9. 25. 대여금은 이 사건 매매예약 이후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2020. 8. 20. 대여금 지급 후 같은 날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되고 바로 다음날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졌으며, 그로부터 불과 한 달여 후 2020. 9. 25. 대여금이 지급되고 2020. 9. 25. 위 두 대여금을 하나로 묶어 금전차용증서가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볼 때, 2020. 9. 25. 대여금 채권 또한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여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의 성립과 사해의사 유무

- 1) C의 채무초과 여부 앞서 본 증거들, 갑 제20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2023. 11. 20.자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현금증여일인 2020. 11. 23.부터 2021. 1. 12.경까지 무렵 C의 적극재산은 1,012,497,440원이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2,806,256,816원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현금증여는 C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더욱 부족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에 따라 C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설령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현금증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제1의 라. 2)항 기재 임대차계약은 부부 공동의 주거공간을 임차하기 위한 것이고, 부부간 명의신탁은 법률상 허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단독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이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피고의 사해의사(악의)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C의 배우자로 C의 자력 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C과 피고 공동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 또한 가압류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피고 단독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또한 피고는, H와 성남시 분당구 I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이 C과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됨으로써 H가 제기한 소에서 'C과 피고가 H에게 H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 350,000,000원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으므로, 피고가 C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합411673(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 2023나11589) 사건에서 그 주장과 같은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와 C이 H에게 위 판결에 따라 매매대금반환 등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피고의 원상회복의무 등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①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② 이 사건 현금증여(160,000,000원)는 이 사건 대여금 원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20. 12. 1.부터 2024. 10. 16.까지의 지연이자 46,553,424원(100,000,000원 ×

0.12 × 1,416/365, 원 미만 버림)을 더한 146,553,42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에 따라 원고에게 146,553,4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민우

별지